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4월 0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올림픽유산과장)

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활용 분야에 치우쳐 왔던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다변화 필요성 대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발판삼아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평화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과 올림픽 유산사업의 체계적 추진을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출연기관 설립

나.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 계승 발전
-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 설립 및 운영(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사 업(안 제3조)

-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 교육·홍보사업
- 평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임 원 (안 제5조)

- 이사장 포함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
-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세부사항 정관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평창평화센터의 출연기관형태의 재단법인 설립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원 구성 및 직무, 이사회, 사무국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단 운영 재원
안 제18조에서는 재단업무에 대해 군수 감독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의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목적은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국제평화 도시의 브랜딩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립형태는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평화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2.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3. 교육·홍보사업
4. 평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6.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7. 국가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무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올림픽 유산사업,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서장 2명 이내로 하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재단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평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결산) 재단은 법 제19조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법 제19조 후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4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